

S-OIL 기업지배구조 헌장

전 문

S-OIL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기업”이라는 비전 하에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의 성실한 경영활동 수행에 지침이 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밑바탕이 된다.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S-OIL주식회사 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를 지향한다.

I. 주주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주주의 책임

-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II. 이사회

4.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이사회는 법령, 회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5.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한다.

- 국적, 민족, 성별 등 다양성과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들을 선임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6. 사외이사

-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사외이사는 경영 감독·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 시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개최한다.

7. 이사회 운영

- 분기 1회 이상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존하며, 중요한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 별로 기록한다.
- 회사는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주요 공시 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위원회 규정, 보수위원회 규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9. 이사의 의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10. 이사의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 회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처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1. 평가 및 보상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이사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며, 회사는 법령에 따라 이사의 보수 및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한다.

III. 감사기구

12.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임원 또는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13. 외부감사인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회사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V. 이해관계자

14.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회사는 임직원, 고객, 채권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15. 윤리경영

- 회사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게시한다.
-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V.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16. 공시

-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한다. 또한 법적 요구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회사는 정기 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
-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공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 회사는 중요한 기업 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VI. 내부경영시스템

17. 의사결정체계

-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상법,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대표이사CEO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권으로 명시한 권한 이외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 받아 권한을 행사한다.
-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회사는 위임전결권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CEO 전결권한 중 일부를 총괄 이하 직책에게 재위임한다.

- 내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산하에 Management Committee, Enterprise Risk Management Committee,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한다.

18. 투명한 경영정보 관리

- 회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한다.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고한다.

19. 준법 경영

- 회사는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으로서 준법경영규정을 제정·시행한다.
- 회사는 기업문화로서 준법경영이 정착되어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과 준법지원부서로 하여금 준법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끝]